

6. 동산 등의 인도 청구

가. 개 설

동산 등의 인도의 경우에는 동산 등의 소재지와 외형상의 특징(기계류의 경우에 기관번호, 제작년도, 제작업체 등의 문자가 새겨져 있을 때는 그에 의한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동차·건설기계와 같이 등록된 물건인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그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이 경우 별지 목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자동차·중기 인도 청구취지 기재례

☐ 중기인도등 청구(대상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기를 인도하라.
위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례]

목 록	
1. 중기등록번호	13 -1150
1. 중 기 명	로다
1. 형 식	64525-RDS
1. 중기일련번호	19-05291
1. 원동기의 형식	1254-3-2587
1. 사용본거지	서울 ○○구 ○○로123길 4(○○동)
1. 등록연월일	2006. 3. 15. 끝.

☞ 중기인도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중기를 인도하고 2014. 1. 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수시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로서는 위 중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9 판결)

☞ 자동차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대를 인도하고, 9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자동차인도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대를 인도하고 2014. 6. 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시까지 1일 돈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자동차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 목록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차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을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례]

목 록

1. 등 록 번 호 : 00다1256
1. 차 명 : 그랜저
1. 형 식 및 연 식 : YR-L 2014
1. 차 대 번 호 : KMHBF21DPLU220266
1. 원동기의 형 식 : G4CM
1. 사 용 본 거 지 : 서울 ○○구 ○○로 135(○○동)
1. 등 록 연 월 일 : 2014. 3. 15. 끝.

다. 기계류 등의 인도 청구취지 기재례

⊠ 물품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 목록에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 존치장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례]

번호	품 명	수량	제작회사	고유번호	소재지
1	아이씨선반	1	(주)○○	DW-2037-85-S	○○시 ○○로 1(○○동)
2	볼 반	1	(주)○○	DW-1200-85-B	○○시 ○○로 1(○○동). 끝.

❑ 물품인도 청구(동시이행관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70 판결)

❑ 동산인도 청구(대상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13,32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권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라. 입 목

❖ 입목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입목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목록 기재례]

목 록	
소재지	강원 ○○군 ○○면 ○○리 333
수종	리기다 소나무
수령	10년생
수고	6m 이상
흉고직경	50cm 이상
주수	500주. 끝.

❖ 원목인도 청구(예비적 병합, 대상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리 산 49 임야 위에 적재된 육송원목 40년생 내지 60년생 1,862본(46,270재)을 인도하라.
위 인도집행이 불능시에는 재당 6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720원 및 이에 대한 1971.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입목매수인이 입목을 매수하고도 벌채기한까지 벌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한이 경과된 후 근 26년이 되는 동안 매수입목을 벌채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목벌채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 볼 것이므로 그 입목매매계약은 벌채하라는 이행의 최고없이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437 판결)

☐ 수목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군 ○○면 ○○동 2 공장용지 9,38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심어진 주목 18년생 376그루,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심어진 오엽송 18년생 73그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 취득하는지 여부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마. 주권·주식, 수표인도 등 청구취지 기재례

☐ 주식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 발행의 1주당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26,560주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식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 김영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95매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8매 중 4매를, 원고 김영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권 160매 중 40매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8매 중 2매를 각 인도하고, 원고 김영호에게 2,018,646,925원, 원고 김영길에게 811,746,074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식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강박에 의하여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면 그 주식매도인은 그 매매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매수인에게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②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매매계약 당시 매도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로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액면 500원의 주식 10주가 액면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된 경우 병합 전후의 주식의 동일성 여부

주식매매계약 이후 액면 500원의 주식 10주가 액면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되고 1,000주권, 10,000주권 등으로 교환된 경우, 교환된 주권은 매도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된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은 그것이 표창하는 주식의 수를 중요한 요소로 할 뿐 주권 상호 간의 개성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대체물이므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그 교환 소지하고 있는 주권 중 당초 매수한 각 주식수에 상응하는 매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9482 판결)

☐ 주식인도 청구

1. 원고에게 피고 김영주는 소외 주식회사 ○○의 권면액 5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23,161주, 피고 신영순은 같은 주식 48,411주, 피고 장선화는 같은 주식 58,793주, 피고 변○○는 같은 주식 4,820주에 대하여 2010. 5.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고 동 주권들을 각 인도하고, 위 주식의 원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및 주권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영주는 27,098,370원, 피고 신영순은 68,787,810원, 피고 장선화는 5,639,4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식인도 청구

1. 원고와 피고 간의 2015. 3. 4.자 주식 및 경영권양도 가계약과 2016. 12. 30.자 주식매매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그 주권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주권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 김정일에게 ○○자동차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3,605주(주식의 종류 :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으로서 2012. 12. 4. 이전에 발행된 구주)의 주권을, 원고 정○○에게 같은 주식 25,000주의 주권을 각 인도하고, 원고 김정일에게 3,163,070원, 원고 정동현에게 2,353,12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증권회사와의 주식위탁관계 해지로 인한 주권반환채권의 성질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상장회사의 주권을 반환할 채무는 동 위탁거래에 있어서의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가 위탁한 주권의 종류와 수량만을 문제삼고 주권자체의 개별성을 중시하지 않음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류채무이다.(1985.2.27. 84나566)

㊦ 주권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구 상법상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 주식 양도의 효력(유효)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주권의 배서는 주주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배서인의 기명에 관한 보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양도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투자가가 내국 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구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 기업 주식 인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금액 및 투자
 비율 등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양도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의 수나 주식소유 비율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당초의 인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 수표인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바. 기타 청구취지 기재례

☐ 국민주택채권반환 청구(소비임치계약, 전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국민주택 채권 4,726장을 인도하라.
 - 나.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돈 58,706,37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
 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
 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은 소비임치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한 증권 자체가 없더라도 그와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6830 판결)

❖ 동산인도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 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0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70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동산의 경락과 선의취득

동산을 채무자로부터 양도담보 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사실을 고지받고서도 경매기일까지 그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경락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동산을 경락받았다면 경락인은 위 동산을 과실없이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서울고법 1989.1.20. 선고 88나19403 판결)

❖ 물품인도 청구(귀금속, 대상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위 물건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목 록

- | | |
|---------|---|
| 1. 다이아 | 반지(1캐럿)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팔지 (6,000,000원) |
| 2. 오팔 | 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2,000,000원) |
| 3. 사파이어 | 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1,500,000원) |
| 4. 에머랄드 | 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2,000,000원) |
| 5. 루비 | 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2,000,000원) |
| 6. 비취 | 반지 1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2,000,000원) 끝. |

[참조판례]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 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 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